

—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조조정등으로 정원을 승인받지 못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담당, 시민복지회관 복지관운영담당, 실업대책반장, 4공단투자유치 지원인력, 정보화사업 추진인력등 일부 정원의 시한이 도래되어
-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인력 조정이 가능한 6급이하 정원은 상시 정원으로 운영하고 초과정원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행정5급의 정원은 감축 조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감축 : 행정5급 △1명(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)
- 상시정원 : 20명(6급4, 7급3, 8급4, 9급3, 기능8급1, 기능9급2, 기능10급3)

구 분	계	일 반 직				기 능 직			한시 시한
		6급	7급	8급	9급	8급	9급	10급	
계	20	4	3	4	3	1	2	3	
체육시설관리사무소 (운영담당)	6	건축 또는 행정1	건축1	전산1 기계1	임업1			통신1	'03.12.31
시민복지회관 (근로자종합복지관)	8	행정1	행정1		행정1	기계1	사무2	난방1 위생1	"
실업대책반장	1	행정1							"
4공단투자유치지원	3	행정1	행정1	건축1					'04.12.31
정보화사업추진	2			전산1	전산1				'04. 6.30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
- 도 정통12410-10941(2003. 11. 6)호 『시군정보화사업』 추진 한시정원 조정권고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9조에 의해 한시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본청, 시민복지회관,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일부 정원 21명에 대하여 시한이 도래됨에 따라
- 초과정원인 행정5급(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) 1명은 감축하고 표준 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인력 조정이 가능한 6급이하 20명은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